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안내 www.k-medi.or.kr 또는 ☎1670-2545

□ 기관 안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 의료분쟁* 관련 상담,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 ※ 제외: 개원(124.8) 이전 사건, 의료법 관련, 소비자원에 신청된 사건,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진료비 환불요청 등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이용은 환자측, 의료기관측 모두 가능합니다.
- '19년 5월 부산지원의 개원으로 영남권역은 부산지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본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분	본원	부산지원
대표번호	1670-2545(전 국)	051-910-7300~7301
주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18층 ※ ①④호선 서울역 하차 후 지하철 서울역 10 번 출구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①호선 부산시청역 1번 출구로 나와 약 100m 직진
홈페이지	www.k-medi.or.kr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란?

-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조정·중재는 의료인 등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감정을 토대로,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학교수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조정·중재절차에서는 상식과 조리에 따라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부와 쌍방 당사자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 상기 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신청 접수 안내(의료중재원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필수서류, 추가서류)

구분	내용
필수 서류	조정신청서 및 별지 1부,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처리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증빙서류(필요시), (대리사: 위임장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수료 납부
추가 서류	진료기록부 사본 및 영상 자료(CD), 진단서, 수술전·후 사진, 진료비 영수증 등

※ 자동개시(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 사건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접수 시에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신청 수수료 안내

수수료 예시		수수료 산식
조정신청액	수수료	
1,000,000	22,000	* 5백만원 이하 <기본수수료 22,000원>
5,000,000	22,000	
10,000,000	32,000	*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000원 + (5백만원 초과 1만원 당 20원 가산한 금액) • [(조정신청액 - 5백만원) × 0.0020] + 22,000원
50,000,000	112,000	
100,000,000	162,000	* 5천만원 초과 • 22,000원 + (5백만원 초과 1만원 당 20원 가산한 금액) + (5천만원 초과 1만원 당 10원 가산한 금액) • [(조정신청액 - 5천만원) × 0.0010] + 112,000원
200,000,000	262,000	

※ 수수료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면제), 중증장애(50%), 경증장애(30%)(감면대상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처리 및 절차

- (처리기간) 조정신청이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사건 필요자료 미제출 등 상황에 따라 불산입 기간 미포함

- (자동개시 사건)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처리절차)

